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공2012상, 177]

판시사항

[1] 2009.5.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법등기법 시행 전에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개정 상법등기법 시행 후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경우,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 동일한 상호)
[2] 선등기자인 '동◆주택건설 주식회사'가 후등기자인 '동◆건설 주식회사'등을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전에 2009.5.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법등기법이 시행된 사안에서, 먼저 등기한 상호인 '동◆주택건설 주식회사'와 나중에 등기한 상호인 '동◆건설 주식회사' 등이 동일하지 않음이 외관·호칭에서 명백하므로, ♥♥@택건설 주식회사 상법 제22조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상법등기법 제30조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5.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법등기법 시행 후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역시 개정 상법등기법 제30조에 상응하도록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상법등기법은 위 개정 당시 부칙

등에 그 시행 전에 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고, 설령 선등기자가 상법등기법 제30조의 개정 전 구법의 존속을 전제로 한 상법 제22조의 해석에 따라 먼저 등기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상법등기법 제30조의 시행 후에는 그와 같은 등기신청이 더 이상 각하될 수 없는 이상 이미 등기된 상호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본다 하여 선등기자의 이익이나 신뢰가 과도하게 침해 또는 손상된다고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그러한 선등기자의 신뢰가 상법등기법의 개정에 따른 상법 제22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개정 상법등기법 시행 후에 사실심변론이 종결된 경우라면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먼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선등기자인 '동◆주택건설 주식회사'가 후등기자인 '동◆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 '동◆디엔씨 주식회사', '동◆부산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 전에 2009.5.28.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법등기법이 시행된 사안에서, 원심 변론종결 당시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는 먼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되는데, 먼저 등기한 상호인 '동◆주택건설주식회사'와 나중에 등기한 상호인 '동◆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 '동◆디엔씨주식회사', '동◆부산개발 유한회사'가 동일하지 않음이 외관·호칭에서 명백하므로, ♥♥@택건설 주식회사에 상법 제22조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

- [1] 상법 제22조,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7.27.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구
상업등기법(2009.5.28.법률 제9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상업등기법 제30조
- [2] 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30조

재판경과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8나893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7가합5323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택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8나893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고, 한편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구 비송사건절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제정된 구 상업등기법(2009. 5. 28. 법 제9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에서는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등기에 관한절차에서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또는 그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석되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참조).

그런데 상법은 상호 선정 자유의 원칙을 선언하는(상법 제18조) 한편으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상법 제23조 제1항)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추가로 마련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구 상업등기법 제30조에서는 위와 같이 먼저 등기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것도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호의 검색·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등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적용의 우려도 없지 않았으므로, 2009. 5. 28. 법 제9749호로 상법등기법 제30조를 개정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먼저 등기된 상호가 가지는 등기 배척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와 동일한상호로 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상법등기법 제30조의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개정된 상법등기법의 시행 이후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역시 개정 상법등기법 제30조에 상응하도록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상법등기법은 위 개정 당시 부칙 등에 그 시행 전에 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고, 설령 선등기자가 상법등기법 제30조의 개정 전 구법의 존속을 전제로 한 상법 제22조의 해석에 따라 먼저 등기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상법등기법 제30조의 시행 이후에는 그와 같은 등기신청이 더 이상 각하될 수 없는 이상 이미 등기된 상호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본다 하여 선등기자의 이익이나 신뢰가 과도하게 침해 또는 손상된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그러한 선등기자의 신뢰가 위 상법등기법의 개정에 따른 상법 제22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개정 상법등기법 시행 후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경우라면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먼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4. 3. 14. 상호를 ‘東部住宅建設 株式會社’(동◆주택건설 주식회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고(이후 1984. 4. 3. 설립목적이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1989. 2. 28. ‘美隆建設 株式會社’(미◇건설 주식회사)에서 ‘東部建設 株式會社’(동◆건설 주식회사)로, 피고 주식회사 동◆는 2000. 12. 14. ‘삼△기업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동◆’로 각 상호변경등기를 하였으며, 피고 동◆디엔씨 유한회사는 2001. 9. 18. 상호를 ‘동◆디엔씨 유한회사’로 하여, 피고 동◆부산개발 유한회사는 2003. 2. 18. 상호를 ‘동◆부산개발 유한회사’로 하여 각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의 상호를 등기한 지역은 모두 서울특별시이고 그 설립목적에는 주택건설 및 그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7. 6.21. 피고들을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기하여 이 사건 상호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09. 5. 28. 위와 같이 개정된 상법 제30조가 시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는 먼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동◆주택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들이 등기한 각 상호인 ‘동◆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 ‘동◆디엔씨 유한회사’, ‘동◆부산개발 유한회사’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호칭에 있어서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상법 제22조 소정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원고에게 상법 제22조 소정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법 제2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주심) 박병대